2026년 상반기 달라지는 관세행정

관세청
Korea Customs Service

목 차

수출입기업 지원 등을 통한 원활한 무역환경 조성	
1 간이수출신고 허용 기준금액 상향('26. 6. 26. 시행 예정)	p.1
2 풀필먼트 수출 확정가격 신고기간 연장('26. 6. 26. 시행 예정)	p.2
3 보세공장 제품 과세방식 신청 시점 개선('26.1.1. 시행)	p.3
4 항공기 부분품에 대한 관세 면제 기간 3년 연장('26. 1. 1. 시행)	p.4
5 반도체 제조장비 부품 등 관세 감면 대상 공장 지정기간 연장('26. 1. 1. 시행)	p.5
납세자 등 국민의 권익보호 및 편의증진	
6 품목분류사전심사 신고불성실 가산세 감면('26. 1. 1. 시행)	p.6
7 ACVA 결정 물품 관세조사(과세가격 분야) 제외('26. 1. 1. 시행)	p.7
8 중소기업확인서 서류 제출을 디지털 방식으로 원스톱 처리('26. 4월 시행 예정)	p.8
9 관세조사 사전통지 기간 합리화('26. 1. 1. 시행)	p.9
10 체약상대국의 원산지조사 결과 회신기간 연장 대상 확대('26. 1. 6. 시행)	p.10
11 개인통관고유부호 유효기간 도입('26. 1. 1. 시행)	p11
엄정한 관세국경 관리를 통한 대외 경제질서 확립	
12 보세운송 운송수단 신고의무('26. 1. 1. 시행)	p.12
13 구매대행업자 연대납세의무 성립요건 개선('26. 1. 1. 시행)	p.13
14 세관공무원의 신변검색 법적근거 명확화('26. 1. 1. 시행)	p.14

1 간이수출신고 허용 기준금액 상향

(전자상거래통관과, 042-481-7843)

종 전	달라지는 내용
□ 간이수출신고 허용 기준금액	□ 간이수출신고 허용 기준금액 상향
○ 수출가격 400만원(FOB 기준) 이하	○ 수출가격 500만원(FOB 기준) 이하

〈 사 례 〉

개정전	• **S사의 K-팝 한정판 프리미엄 굿즈 수출가격은 450만원 상당**으로 간소한 간이수출신고 대신 **일반수출신고를 하게 되어** S사의 **수출 관련 업무량이 늘어나고 비용이 증가됨**
개정후	• **간이수출신고 허용 기준금액 500만원으로 상향**되어 **S사 상품 해외 판매 시 간이수출신고**를 통해 **수출 관련 업무량 감소 및 비용 절감**

□ **【기대효과】** 간이수출 기준금액을 상향하여 고가·프리미엄 상품의 수출신고 편의성 제고, 신고 수수료 절감

□ **【시행일】** '26. 6. 26. 시행 예정(「수출 및 반송통관에 관한 고시」 제43조 개정)

2 풀필먼트 수출 확정가격 신고기간 연장

(전자상거래통관과, 042-481-7843)

종 전	달라지는 내용
□ 풀필먼트 수출 확정가격 신고기간	□ 풀필먼트 수출 확정가격 신고기간 연장
○ 판매금액 확정일 또는 판매대금 입금일로부터 60일이 경과하기 전까지 실제 공급한 금액을 신고	○ 판매금액 확정일 또는 판매대금 입금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하기 전까지 실제 공급한 금액을 신고

〈 사 례 〉

개정전	• **풀필먼트 방식으로 수출 판매하는 A사의 물품**은 다양한 거래조건*으로 판매되어 **회계처리에 장기간 소요됨**. A사가 **판매대금 확정일·입금일로부터 60일 이내 확정가격을 신고하는데 현실적 어려움**을 겪고 있음 * 물품대금 지급 시 할인율 적용 및 누적 적립금 사용
개정후	• 풀필먼트 수출 시 **확정가격 신고기간이 판매금액 확정일·입금일로부터 90일까지로 확대**되어 A사의 **확정가격 신고 부담**이 **경감**되고, 실제 공급한 수출가격 신고로 **외환거래 신고의무 위반**을 **예방**할 수 있게 됨

□ **【기대효과】** 풀필먼트 수출시 확정가격 신고에 필요한 충분한 기간을 제공함으로써 기업의 부담이 경감되고, 정확한 수출대금 신고로 외국환거래 신고의무 위반 사전 예방

□ **【시행일】** '26. 6. 26. 시행 예정(「수출 및 반송통관에 관한 고시」 제42조 개정)

③ 보세공장 제품 과세방식 신청 시점 개선

(보세산업과, 042-481-7821)

종 전	달라지는 내용
□ 혼용작업 신청기한 ○ 내·외국물품 혼용작업 전까지	□ 혼용비율 과세 적용 신청기한 ○ 혼용작업 승인 신청을 수입신고 전까지 기한 확대
□ 원료과세 적용 신청 기한 ○ 원재료를 사용신고하기 전까지	□ 원료과세 적용 신청기한 ○ 원료과세 적용 신청을 수입신고 전까지 기한 확대

〈 사 례 〉

개정전	• 외국 원재료를 수입하여 제품을 생산하는 보세공장 D사는 **혼용승인 · 원료과세 사전신청을 누락하여 추가 관세를 추징당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
개정후	• **신청기한이 수입신고 전으로 확대**됨으로써 **단순 사전승인 누락 실수에 따른 불이익을 방지**할 수 있게 되어 **D사의 조세부담 완화**

□ **【기대효과】 단순 사전 승인 누락**에 따른 **과도한 추징**을 **방지**하고, 유리한 방식의 과세로 첨단·핵심 산업의 **조세부담 완화** 및 **경쟁력 강화**

□ **【시행일】** '26. 1. 1. 시행(이 법 시행 이후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관세법」 제188조, 189조 개정)

4 항공기 부분품에 대한 관세 면제기간 3년 연장

(통관기획과, 042-481-7857)

<table>
<tr><th>종 전</th><th>달라지는 내용</th></tr>
<tr>
<td>□ 민간항공기 협정대상 항공기 부분품*에 대한 관세면제 적용기간별 감면율 적용
<table>
<tr><td>2025. 1. 1.
~
2025. 12. 31.</td><td>2026. 1. 1.
~
2026. 12. 31.</td><td>2027. 1. 1.
~
2027. 12. 31.</td><td>2028. 1. 1.
~
2028. 12. 31.</td><td>2029. 1. 1.
~
2029. 12. 31.</td></tr>
<tr><td>100분의
100</td><td>100분의
80</td><td>100분의
60</td><td>100분의
40</td><td>100분의
20</td></tr>
</table>
* 중소기업 아닌 자가 항공기(부분품 포함)를 제조·수리하기 위해 사용하는 「세계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 협정 부속서 4의 민간항공기 무역에 관한 협정」 대상 중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물품 (관세법 제89조 제6항 제1호)</td>
<td>□ 관세 면제 <u>적용 시기 3년 연장</u>

○ 2028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한 물품에 대하여 관세 면제</td>
</tr>
</table>

□ **【기대효과】** 항공산업 경쟁력 강화 및 정비비용 절감

□ **【시행일】** ’26. 1. 1. 시행(「관세법」 제89조제6항제1호 개정)

⑤ 반도체 제조장비 부품 등 관세 감면 대상 공장 지정기간 연장

(통관기획과, 042-481-7857)

종 전	달라지는 내용
□ 반도체 제조장비 부품 등 관세 감면 대상 공장 지정기간 연장 ○ 제조·수리공장의 지정기간 - 3년 범위 내	□ 반도체 제조장비 부품 등 관세 감면 대상 공장 지정기간 연장 ○ 제조·수리공장의 지정기간 - 10년 범위 내

□ **【기대효과】 반도제 및 항공기 제조·수리 기업의 투자안정성 제고**

□ **【시행일】** '26. 1. 1. 시행(이 법 시행 전에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경우로서 이 법 시행 이후 지정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도 적용, 「관세법」 제89조제3항 개정)

⑥ 품목분류사전심사 신고불성실 가산세 감면

(세원심사과, 042-481-7642)

종 전	달라지는 내용
□ 신고불성실 가산세 감면사유	□ 감면 사유 확대
○ 특수관계자간 거래에 대한 과세가격 사전심사 결과 통보 후 2개월내 수정신고 등	○ (현행과 같음)
<신설>	○ 품목분류 사전심사 결과를 통보받고 2개월 내 수정신고(사전심사 신청 이후 해당 물품이나 동일물품을 수입신고한 경우로 한정)

〈 사 례 〉

개정전	• **A사는 품목분류사전심사 신청**하였으나 긴급한 사정으로 **우선 수입신고, 수입신고 후** 고세율의 HS코드 품목으로 **사전심사 결정되어 부족세액을 수정신고**하는 경우 **신고불성실 가산세**를 **부담**함
개정후	• A사는 품목분류사전심사 신청하였으나 긴급한 사정으로 우선 수입신고, 수입신고 후 고세율의 HS코드로 **사전심사 결정되어도 부족세액을 2개월 내 수정신고** 하는 경우 **신고불성실 가산세**를 감면함

□ **【기대효과】 납세자 편익 증진**, 품목분류 사전심사 제도 활성화로 HS 불확실성 해소 등

□ **【시행일】** '26. 1. 1.시행(이 법 시행 전에 제86조제2항에 따라 사전심사 결과의 통지를 받아 시행 이후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도 적용, 「관세법」 제42조의2제1항제7호 신설)

7 ACVA 결정 물품 관세조사(과세가격 분야) 제외

(심사정책과, 042-481-7767)

종 전	달라지는 내용
□ 특수관계 사전심사(ACVA) 결정 물품 관세조사 가능 ○ 법령이나 거래관계 등의 변경 여부 ○ 중요한 부분 고의 누락하거나 허위 작성 여부 ○ 과세가격 결정방법에 따라 적정하게 신고하는지 여부	□ 특수관계 사전심사 결정 물품은 관세조사 시 과세가격 분야 제외 ○ 과세가격 이외 분야(품목분류, 외환거래, 수입요건 등) 가능

〈 사 례 〉

개정전	• **세관은** A사에 대한 관세조사 시 **이미 과세가격 결정을 받은 특수관계 사전심사(ACVA) 결정 물품**의 **과세가격 자료을 제출받아 관세조사 가능**
개정후	• 세관은 A사에 대한 관세조사 시 **특수관계 사전심사(ACVA) 결정 물품의 과세가격 분야는 관세조사 할 수 없음**

□ **【기대효과】** 납세 예측 가능성 제고 및 성실신고 문화 확산

□ **【시행일】** '26. 1. 1. 시행(「관세조사 운영에 관한 훈령」 제9조 개정)

⑧ 중소기업확인서 서류 제출을 디지털 방식으로 원스톱 처리

(데이터담당관실, 042-481-7777)

종 전	달라지는 내용
□ 중소기업확인서 직접 제출	□ 관세청-중소벤처기업부간 시스템과 데이터 연동으로 중소기업확인서 제출 간소화
○ 수출입기업이 수출환급 등 필요한 중소기업확인서를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발급받아 세관에 직접 제출	○ 세관 담당자가 중소기업 여부를 전자통관시스템에서 실시간 자동 확인

〈 사 례 〉

변경 전	• A사는 **수출환급 등 중소기업 우대혜택을 신청하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부가 발급한 **중소기업확인서***를 **세관 방문 · 우편 · 이메일** 등으로 **제출해야 함** * 중소기업벤처부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신청·발급 (유효기간 1년)
변경 후	• **A사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중소기업확인서를 발급**받으면 **세관담당자**가 **전자통관시스템**에서 **실시간 A사의 중소기업 해당 여부**를 **직접 확인 가능함**

□ **【기대효과】** 중소기업확인서 제출에 따른 **민원인의 행정 부담 경감**하고 정보시스템과 데이터의 연동으로 **증명서의 신뢰도 확보**

□ **【시행일】** '26. 4월 시행 예정

⑨ 관세조사 사전통지 기간 합리화

(기업심사과, 042-481-7656)

종 전	달라지는 내용
□ 관세조사의 사전통지	□ 관세조사의 사전통지 기간 연장 등
○ 조사 시작 15일 전 조사대상, 조사 사유 등 통지	○ 조사 시작 20일 전 조사대상, 조사 사유 등 통지
○ <신설>	○ 불복 청구 등의 재조사결정에 따른 재조사의 경우에는 7일 전 통지

□ **【기대효과】 사전통지 기간 연장**으로 기업의 관세조사 준비 기간 확보 및 **재조사 사전통지 기간 명확화**

□ **【시행일】** '26. 1. 1. 시행 (「관세법」 제114조제1항)

⑩ 체약상대국 원산지조사 결과 회신기간 연장 대상 확대

(자유무역협정집행과, 042-481-3234)

종 전	달라지는 내용
□ 체약상대국의 원산지조사 결과 회신기간 연장(6개월 범위) ○ (사유)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 불복절차 진행, 관세당국,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의 귀책사유 등으로 회신기간내 결과 회신이 불가한 경우 ○ (대상) EFTA·EU·페루·미국·튀르키예·콜롬비아·베트남·중국·중미·영국과의 협정	□ 체약상대국 원산지조사 결과 회신기간 연장(6개월 범위) 대상 확대 (좌 동)
<신 설>	○ (대상 추가) 아세안·인도·호주·인도네시아·이스라엘·RCEP·캄보디아·필리핀과의 협정

〈 사 례 〉

개정전	• 서울세관이 필리핀 관세당국에 요청한 수입물품의 원산지확인요청에 대하여 **필리핀 관세당국이 자연재해를 이유로 회신기간내 결과 회신을 하지 못하는 경우 협정관세 적용이 배제될 수 있음**
개정후	• 자연재해로 회신기간 내 결과회신이 어려운 경우 **필리핀 관세당국은 서울세관에 6개월 이내 회신기간 연장을 요청할 수 있고, 연장된 기간 내 원산지가 충족한다는 결과를 회신**한다면 서울세관의 **원산지조사**는 **무혐의로 종결될 수 있음**

□ **【기대효과】**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원산지조사 요청에 대한 결과회신 기간의 연장을 요청할 수 있는 대상협정 국가를 추가함으로써 **납세의무자의 권익 보호**

□ **【시행일】** '26. 1. 6. 시행(「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7조제2항 개정)

11 개인통관고유부호 유효기간 도입

(전자상거래통관과, 042-481-7630)

종 전	달라지는 내용
□ 부호의 관리	□ 개인통관고유부호 유효기간 신설, 미갱신 시 처리사항 신설
○ (신청유형) 신규, 변경(정보, 부호), 사용정지 ○ (유효기간) 없음	○ (신청유형) 신규, 변경(정보, 부호), 사용정지, 갱신, 해지 ○ (유효기간) 1년

〈 사 례 〉

개정전	• A는 해외직구를 위한 개인통관고유부호의 발급정보가 변경이 되었음에도 수정하지 않고 **유효기간 제한없이 개인통관고유부호 사용 가능**
개정후	• A는 개인통관고유부호를 **1년마다 갱신**하면서 자신의 **발급정보를 주기적으로 확인하여 현행화**하게 됨

□ **【기대효과】 수입자 정보 현행화**와 **개인정보 보호** 목적에 기여

□ **【시행일】** '26. 1. 1. 시행 (「통관고유부호 및 해외거래처부호 등록·관리에 관한 고시」 제16조 개정)

⑫ 보세운송 운송수단 신고의무

(관세국경감시과, 042-481-7917)

종 전	달라지는 내용
□ 보세운송시 운송수단	□ 운송수단 신고의무 신설
○ 운송수단을 정하여 신고한 경우 신고한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보세운송(위반시 과태료) * 운송수단 미신고시 처벌 불가	○ 신고한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보세운송(위반시 과태료)

〈 사 례 〉

개정전	• A사는 보세운송 신고 후 **보세운송에 사용될 운송차량을 신고하지 아니하고 보세운송**을 하였으나, **운송수단 허위신고로 처벌받지 아니함**
개정후	• B사는 보세운송 신고 후 **보세운송에 사용될 운송차량을 신고하지 아니하고 보세운송**을 하여 **운송차량 미신고로 과태료를 부과 받음**

□ **【기대효과】** 보세운송에 사용될 운송수단(차량) 신고의무를 명확히 하여 밀수출입 등 통관질서 교란행위 방지

□ **【시행일】** '26. 1. 1. 시행(「관세법」 제216조 개정)

13 구매대행업자 연대납세의무 성립요건 개선

(조사총괄과, 042-481-7952)

종 전	달라지는 내용
□ 구매대행업자 연대납세의무 요건(제19조)	□ 구매대행업자 연대납세의무 요건 개선
○ 화주로부터 수입물품의 관세 등 수령	○ 화주로부터 수입물품의 관세 등 수령
○ 과세가격 등의 정보를 거짓 제공	○ <삭제>

〈 사 례 〉

개정전	• **화주로부터 관세 등을 수령한 구매대행업자 A**는 **해외 판매자가 과세가격 등의 정보를 거짓제공하여 저가신고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여 **연대납세의무를 회피**함
개정후	• **구매대행업자 A가 관세 등을 화주로부터 미리 수령한 경우**에는 구매대행업자 A는 **연대납세의무를 지게 되어 부족세액을 납부해야 함**

□ **【기대효과】** 불법 구매대행업자가 과세가격을 저가로 허위신고하여 관세 등을 탈루하는 행위를 억제하고, 부당하게 관세 등 부족분을 화주가 부담하게 되는 사례를 예방

□ **【시행일】** '26. 1. 1. 시행(이 법 시행 전에 수입신고한 경우 구매대행업자의 연대납부의무에 관해서는 종전의 규정을 따름, 「관세법」 제19조제5항제1호다목 개정)

⑭ 세관공무원의 신변검색 법적근거 명확화

(관세국경감시과, 042-481-7831)

종 전	달라지는 내용
□ 세관공무원의 물품 등 검사 권한 ○ 관세법 위반행위 방지를 위해 물품·운송수단·장치장소 및 관계장부·서류 검사 가능	□ 세관공무원의 신변검색 법적근거 마련 ○ (현행과 같음)
<신설>	○ 마약류 등 검사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검색장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마약류 등의 은닉이 의심되는 경우 그 물품을 내보이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체검색을 할 수 있음

〈 사 례 〉

개정전	• 외국에서 입국한 여행자의 옷 안에 은닉한 물품을 확인하기 위해 촉수검사를 실시하고자 하였으나 **신변검색**을 **거부함**
개정후	• 여행자에 대한 세관공무원의 **신변검색 법적 근거 고지 후** 마약류 등 소지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검색장비 사용 및 신체 검색**을 할 수 있게 되어 여행자의 **검사거부**를 **방지할 수 있게 됨**

□ **【기대효과】** 신변은닉이 용이한 마약류 등 사회안전 저해물품에 대한 **관세국경단계 적발** 및 **효과적인 차단 가능**

□ **【시행일】** '26. 1. 1. 시행(「관세법」 제265조제2항 및 제3항 신설)